



문서번호 사법-2010-0302

수 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

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(담당 : 장동엽 간사 02-723-0666 taijist@pspd.org)

제 목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

날 짜 2010. 3. 24. (별첨 포함 총 4 쪽)

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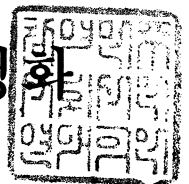
.....

1. 안녕하십니까?
2.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(소장 : 하태훈, 고려대 교수)는 귀 위원회로부터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받았습니다. 이에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이 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귀 위원회의 법안심의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 끝.

■ 별첨

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

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·정현백·청화



「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사면법 개정안」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

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0년 2월 11일 박영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'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'(의안번호 7597호, 이하 '박영선 의원안')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힘.

1.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관련

□ 박영선 의원안(제10조 2의 ③)

- 현행법 제10조의2제3항 중 “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”를 “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2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, 2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.

■ 의견

-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작용의 효력을 제약하는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,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며, 그 한계를 넘어 남용될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임.
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설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박영선 의원안과 같이 최소한 5인 이상의 과반수로 해야 할 것임.
-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작용인 법원의 판결을 바꾸는 것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을 외부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박영선 의원안을 기초로 하되, 그 밖의 5인 중 2인의 위원은 반드시 법관이어야 한다거나, 대법원장이 공무원인 위원 중 1인으로 법관을,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



2인 등 최소한 총 3명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■ 참여연대의 안

- 1안

“(전략)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 단 공무원인 위원 중 2인은 법관으로,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2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, 2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.”

- 2안

“(전략)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 단 공무원인 위원 중 1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,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2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, 2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.”

2.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·공개범위와 공개방법 관련

□ 박영선 의원안(제10조 2의 ⑤)

- 현행법 제10조의2제5항 중 “심사내용의 공개시기·공개범위와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”를 “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,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
2.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
3.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

■ 의견

- 사면심사위원회의 첫 임무였던 지난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서 45명의 재벌총수와 경영진들이 “경제 살리기”를 이유로 대거 사면된 것을 비롯해 지난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근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



을 통해서 사면심사위원회는 그 위상을 제고해야 할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음.

- 사면심사위원회의 불투명한 심사과정 뿐 아니라, 경제개혁연대의 사면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밀실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정보 공개거부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, 현행법에서 '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·공개범위와 공개방법'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바꿔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.
- 특히 지난 2008년 8월 1일, 경제개혁연대의 '사면심사위원회 명단 및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'에 대해 법무부는 "위원의 명단 등이 공개될 경우 위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"는 이유를 들어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바 있으나, 이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정한 시행령(대통령령)에 비추어 보아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.
 특히 공개방법에 관련하여 사면법 시행령(대통령령) 제4조에서 "(전략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(정보공개법)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"고 하고 있으나, '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과 경력사항'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의 "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" 또는 "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"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.
- 따라서 현행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가운데 다른 사항들과 달리 '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'에 대해서는 박영선 의원안과 같이 비공개 사유를 두어서는 안 되며, 반드시 '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'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임.

끝.